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,875,275,742	146,258,272
일반회계	4,434,031,640	133,020,949
특별회계	441,244,102	13,237,323
기타특별회계	441,244,102	13,237,323
대학운영특별회계	8,241,219	247,237
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	30,473,770	914,213
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	796,780	23,903
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	363,964,850	10,918,946
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	37,004,000	1,110,12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763,483	22,904

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"세입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"채무부담행위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4 조 2010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29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,024,000천원으로 한다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